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2. 1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녹색건축과	담당 자	• 과장 송시화, 사무관 박원호, 주무관 권최남 • ☎ (044) 201-3768, 3772, 4753	
보 도 일 시		2017년 12월 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3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깨끗한 실내 공기질 확보 건축설비 규칙 개정안 시행... 환기설비 공기 여과성능 강화 등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안을 12월 4일(월) 공포·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*의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(필터)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.
 - *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 공기와 바꿔주는 장치로 동력 여부에 따라 자연 환기와 기계환기로 구분
 - 자연환기설비인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현행 50%에서 60%로 강화하고,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현행 60%에서 80%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켰다.
 - 또한,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(헤파필터 등)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*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.
 - * 각종 필터에 대해 한국산업규격(KS)에서 규정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으로 입자크기에 따라 중량법, 비색법, 계수법(신규) 등이 있음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
- 이번에 개정되는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」 전문은 법제처 ‘국가법령정보센터’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원호 사무관(☎ 044-201-37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